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양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5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박철성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성준,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수빈, 박승진,
서상열, 송도호, 오금란,
왕정순, 유정희, 이상욱,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민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물순환의 범위를 빗물에서 유출지하수까지 확장하여 물순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법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련법에 맞춰 용어를 정리 함(안 제2조제4호).
- 나. 물순환 범위를 유출지하수까지 확장하고자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4호, 제9조1항, 제36조 본문, 제36조제1호에서 제3호, 제37조 본문, 제37조제2호, 제37조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 지하수법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를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으로, “눈녹은”을 “눈 녹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출지하수 발생 시 유출지하수의 처리 또는 이용·함양을 위한 계획

제9조제1항 본문 중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를 “제8조제2항의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빗물관리시설”을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빗물관리시설”을 “빗물관리시설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빗물관리”를 각각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으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를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의 중요성을”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을 “빗물관리시설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을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의 중요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빗물관리”를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u>물환경보전법</u>」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u>눈 녹은 물</u>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p> <p>5.·6. (생략)</p> <p>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① (생략)</p> <p>②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③·④ (생략)</p> <p>제9조(사전협의를 대상과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u>사업구역내에</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 ----- ----- <u>눈 녹은</u> ----- ----- -----.</p> <p>5.·6. (현행과 같음)</p> <p>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유출지하수 발생 시 유출지하수의 처리 또는 이용·함양을 위한 계획</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전협의를 대상과 시기) ① - ----- ----- ----- <u>제8조제2항</u></p>

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퍼센트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36조(연구·개발의 촉진)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 시범설치 및 보급 촉진 사업
2. 빗물관리 교육·홍보자료 개발
3. 그 밖에 빗물관리 촉진 등 도시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3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빗물

의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연구·개발의 촉진) -----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1. 빗물관리시설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
2.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
3. -----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

제37조(홍보 및 교육) ----- 빗물·

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략)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생략)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빗물관리 홍보에 대한 지원
5. (생략)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의 중요성을 ----- 빗물관리시설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를 --.

1. (현행과 같음)
2.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의 중요성과 -----

3. (현행과 같음)
4. -----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6조(연구·개발의 촉진) 및 제37조(홍보 및 교육)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에서 2021년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시작으로 유출지하수를 포함한 통합 물순환정책¹⁾을 시행하여 유출지하수 이용 확대를 위한 관련시설 설치 및 홍보 등 민·관협력 사업을 기추진 중에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참고자료로 2040년 물순환회복 기본계획을 첨부함(붙임)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2040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수립(물순환정책과-28529, '22. 8. 18.)

V 추진방향 및 목표

□ 물순환회복 기본방향

○ 빗물의 유출저감을 위한 빗물관리에서 도시 물순환 관리로 확장

-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쾌적성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보완
- 자연순환과 인공순환이 상호 보완되어 균형적으로 작동하도록 통합 물순환 관리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전협의제도 및 정책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도시

목표

통합 물순환관리

자연물순환 확대

물자원 순환이용 증대

관리
전략

세분화된
지역맞춤형
물순환 관리

1. 세분화된 지역맞춤형 물순환 관리체계 도입
2. 물순환 DB구축 및 지도화
3. 복합기능의 자연형 물순환시설 확대
4. 물순환 중점관리지역 지정
5. 공공-민간 물순환 확산을 위한 협업체계

사업
확대

건전성 강화를 위한
통합 물순환 사업

1.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2. 통합형 물순환센터 건립
3. 대규모 개발사업 친환경 물순환설계 적용
4. 물순환 기능을 가진 녹색인프라형 도로 조성
5. 소규모 건축물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6. 도시 물자원 활용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1. 국제 컨퍼런스 개최
2. 물순환시민위원회 역할 강화
3. 물순환인증마크 도입

2-4 대규모 개발사업 친환경 물순환설계 적용

- 대규모 개발사업 빗물·물재이용·유출지하수 통합한 물순환설계 적용
 - 대부분 조경설치 단계에서 인공침투시설 위주의 LD를 계획, 체계적 물순환 관리는 미흡
 -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빗물, 중수도, 유출지하수 시설을 연계 체계적 물순환 관리 도모

○ 시행방안

- [적용대상] 대지면적 1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 [적용방안]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보완, 빗물·중수도·유출지하수 계획 통합 관리
- ▶ 물순환시민위원회 자문 관련 계획 제출을 의무화, 활용 계획을 통합적으로 검토

< 주요 검토내용 >

◆ [빗물유출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 + 물자원의 순환이용 계획] 의 적정성

- 빗물분담량(5.5mm/hr)을 만족하는 빗물관리시설 계획
- 빗물 중수도·유출지하수는 시설(부지) 내에서 청소·조경·수경시설·공동시설 관리용수로 순환이용 되도록 계획, 하천 인접 지역 개발시 발생된 유출지하수 등은 하천 용수로 이용

추진계획 물순환 계획 반영·검토기준 마련('22년) → 적용 ('23년 ~)

2-5 소규모 건축물 물순환관리를 위한 시설 지원

- 저영향개발이 적용되지 못하는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빗물관리시설 지원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 물순환 개선 효과성이 높은 빗물관리시설로 지원시설 확대
- 시행방안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효과를 모니터링 후 단계별 확대 추진
 - [지원대상] 대지면적 1,000㎡미만 소규모 건축물 (저영향개발 의무대상 외 시설)
 - [지원방법·금액] 신청을 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50~90% 지원(최대 2천 만원)



<빗물저장용>

+



<유출저감 침투시설>



<빗물정원>



<투수성 주차장>

추진계획 지원계획·기준 마련('22년) → 시범사업 추진('23년) → 확산('24년 ~)

2-6 유출지하수 활용 민·관 협력사업

○ 버려지는 깨끗한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민·관 Win-Win 협력사업

- 하루 7만 m³의 유출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져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
- 하천 인접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하천 용수로 활용, 하수배출을 최소화
 - ▶ 하천 인접 0.5km 이내, 유출지하수 발생량 100m³/일 이상 아파트 및 건축물 대상
 - ▶ 건물에서 하천으로 연결되는 '유출지하수 전용관' 설치



<유출지하수 전용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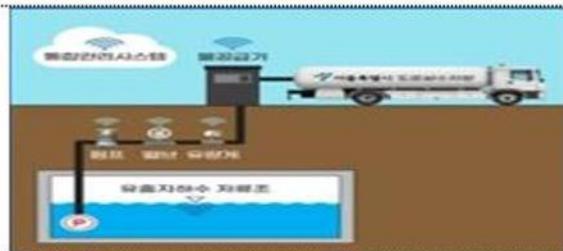
<민·관 협력사업 예시도 - 사업전후>

추진계획 | **요금감면 조례개정('21.12.)** | **시범사업 ('22~'23년)** | **확산 ('24년 ~)**

2-7 도시물자원 활용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폭염·가뭄·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시 곳곳에 재생수 공급시설 설치

- 유출지하수·하수처리리수 등 재생수를 공급하는 '블루워터 스테이션' 100개소 조성
- 공사장 살수, 조경용수 등 시민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구축
- 도로청소, 조경, 하수관 청소 등 도시관리용수는 재생수로 사용



<유출지하수 공급예시>



<블루워터 스테이션 모델>

추진계획 | **구축계획수립, 모델마련('22년)** | **시범사업 ('23년)** | **자치구별 확대 ('24년 ~)**

3. 물순환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 물분야 정책공론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 해외 대도시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물관리 정책을 시행
- 메가시티급 도시간 네트워크를 구축, 물분야 교류·협력 구조 마련
 - ▶ 워터서울 2021 참여도시 : LA, 싱가포르, 도쿄, 시카고, 함부르크 등
- 국내·외 석학·정책리더·시민과 함께 물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 논의



<국제 컨퍼런스>



<시민 정책제안 토론회>



<물산업 일자리 박람회>

□ 물순환시민위원회 역할 강화

- 물순환 정책 활성화를 위해 물순환시민위원회 전문성 및 정책기능 강화
 - 기획분과(배설)조직을 두어 위원회 운영계획 및 논의과제 정리, 체계적인 운영 도모
 - 도시계획·건축·상하수도·하천 등 다분야 전문가의 참여 확대
 - 분과위원회(빗물·물재이용, 지하수를 통합물관리 기조에 부합토록 기능 중심으로 개편 검토
 - ▶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정책, 계획, 분쟁조정, 시민소통
- 위원들의 정기적인 정책 발제(기고) 추진, 공유·홍보를 위한 온라인채널 구축

□ 물순환 저변확대를 위한 '물순환마크' 도입

- 건축물, 도로, 공원 등 물순환 설계가 적용된 시설에 '물순환마크' 부여
 - 물순환 설계가 적용된 시설을 발굴하여 물순환마크 부여(평가기준 수립)
 - '물순환마크' 가 부여된 건축물과 시설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유·홍보